

전임교원 신규공개채용 전형규정

1989. 12. 01. 최초제정	2007. 12. 11. 부분개정	2024. 10. 01. 부분개정
1991. 11. 01. 부분개정	2009. 08. 01. 부분개정	2025. 01. 01. 부분개정
1996. 03. 13. 부분개정	2013. 10. 25. 부분개정	
1997. 11. 08. 부분개정	2016. 04. 01. 부분개정	
1998. 12. 30. 전면개정	2017. 06. 15. 부분개정	
2002. 10. 31. 부분개정	2020. 10. 01. 부분개정	
2003. 06. 27. 전면개정	2022. 03. 01. 부분개정	
2005. 11. 16. 부분개정	2024. 05. 01. 부분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 전임교원(이하 교수, 부교수, 조교수) 신규채용을 위한 인사행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능력이 있는 우수한 교원 채용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25.>

제2조(적용범위) 전임교원 신규채용에 관하여는 정관, 법률 및 교육부장관이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단,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신규채용은 별도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10.25.>

제3조(응시자격) 대학 교원신규채용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1. 조교수 이상<개정 2013.10.25.>

가.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단, 특수과목 전공자는 제외)

나. 대학, 대학원의 전공학과가 임용학과와 일치·유사 또는 상응하는 자

다.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채용 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라. 교수 자격인정 령에 의하여 교수자격을 취득한 자

마. 해당분야의 연구경력 또는 산업체 현장경력이 월등하여 제1목 또는 제4목에 상응한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자

제4조(교원의 임기) 신규임용이 확정된 교원의 임기는 학교법인 청운학원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전형 및 임용방법

제5조(교원채용심의위원회) 신규교원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총장이 위촉하며 교원채용심의위원회 위원은 부총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 학생·취업처장, 입학처장, 글로벌사업단장, 임용부서의 해당 학과장으로 한다. 단, 간호대학 채용 시 간호대학장을 추가 위촉한다.<개정 2013.10.25., 2016.04.01., 2017.06.15., 2022.03.01., 2024.05.01., 2024.10.01., 2025.01.01.>

제6조(전형 및 심사방법) ①신규임용 후보자 선정을 위하여 기초심사, 전공심사(전공적 부심사, 경력심사, 연구실적물심사), 공개강의 심사, 면접 심사로 총 4단계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필요에 따라 총장의 허가를 득하여 심사 및 평정 방식을 변경 할 수 있다.<개정 2017.06.15.>

②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각 단계별로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③각 전형 별로 합격자를 선정하며 전형 별 점수는 합계하지 않고 면접전형에서 최종 임용 후보자를 선정한다.<개정 2013.10.25., 2017.06.15.>

제7조(임용예정 직급 및 방법) ①조교수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직교수로서 대학 교육경력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의 현장경력이 충분한 자에 대해서는 직급을 달리하여 임용 할 수 있다.<개정 2013.10.25.>

②신규 교원의 임기는 정관 제39조의 2 및 시행세칙 제7조에 의한다.<개정 2013.10.25.>

제8조(심사위원 구성) 각 단계별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기초심사위원은 채용예정학과 소속 전체 전임교원으로 한다.<개정 2016.04.01., 2017.06.15., 2020.10.01.>
2. 전공심사의 심사위원은 해당 학과장 1인과 추천을 통하여 선발된 임용관련학과 교수 2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 중 1/3은 외부심사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7.06.15.>
3. 공개강의심사위원은 임용 관련 학과 교수로 하고 학과 심사위원의 수가 2인 미만일 경우 교원채용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다.<개정 2017.06.15.>
4. 면접심사위원은 총장, 교원채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3.10.25., 2017.06.15.>

제9조(심사내용 및 평가방법) 단계별로 제5조(심사위원 구성)에 의한 심사 단계별 배점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초심사는 채용기준에서 정한 학력, 연구실적, 대학교육경력, 산업체경력 등의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며,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는 불합격 처리한다.<개정 2017.06.15., 2020.10.01.>
2. 전공심사, 공개강의 및 면접심사는 '[별표 1] 전임교원 신규임용 심사기준' 과 같이 심사한다.<개정 2017.06.15., 2020.10.01.>
3. 기초심사는 PASS/FAIL로 구분하고, 이후 전공심사, 강의평가 및 1차 면접, 2차 면접의 전형에서 각 전형의 평가 평균 점수가 60점미만일 때는 불합격으로 처리한다.<신설 2020.10.01.>

제10조(동점자 처리) 각 단계별로 동점일 경우에는 총장의 재가를 얻어 대학이 정한다.<개정 2017.06.15.>

제11조(교원 인사위원회 동의) 교원인사위원회는 공개채용 심사결과를 전체적으로 토의하여 임용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심사결과가 부적합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총장에게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제4조 교원의 임기 중 조교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일 현재 재직 중인 조교의 임기에 관하여는 개정 지침에 의하여 임명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과 동시 종전 지침은 폐지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임교원 신규임용 심사기준<개정 2017.06.15., 2020.10.01.>

가-1. 기초심사기준(Pass or Fail)<신설 2020.10.01.>

기 초 심 사 표

인적 사항	응시학과		과 목 명	
	응시번호		성 명	

구 분	항 목		심사결과	심사자의견
기 초 심 사	대학교원 자격기준	‘조교수’ 자격기준 충족하는 자		
	채용공고 적격여부	공고문 학위 이상 소지자		
		세부자격 사항을 충족한 자		
		지원자의 전공과 채용학과와 일치, 유사 또는 상응여부		
	서류접수 결과기준	증명서류 일체 제출 여부		
		연구실적 200% 이상인 자		
		연구실적 발표구분 (국내, 국제) 및 발 표게제지명 일치 여 부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심사자		(인)
-----	--	-----

가-2. 전공분야와 채용분야와의 일치여부(총 배점 : 15점)<개정 2020.10.01.>

구 분		배점항목	배점비율	심사결과	비고
전문대학	전문대학 졸업	전공일치	2		
		전공유사	1.5		
		전공상응	1		
	학사 편입.졸업	전공일치	2		
		전공유사	1.5		
		전공상응	1		
4 년 제	학 사	전공일치	4		
		전공유사	3		
		전공상응	2		
석 사		전공일치	6		
		전공유사	4		
		전공상응	3		
박사과정 및 수료자		전공일치	4		
		전공유사	2		
		전공상응	0		
박 사		전공일치	5		
		전공유사	3		
		전공상응	1		

※ 전공분야에서 4년제 대학(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 학위수여자 포함)에는 전문대학을 포함하며,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채점한다.(4년제 대학에는 전문대학을 포함)

※ 박사의 경우 박사과정 및 수료자를 포함하며,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채점한다.

※ 각각의 경우를 합산하여 채점

나. 경력과 채용분야와의 일치여부(총 배점 : 40점)<개정 2017.06.15.>

경력(대학교육(강의) 및 산업체경력)을 동등하게 인정하여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교수자격경력을 산출하고 해당하는 경력으로 배점한다.

구분	기준배점	총 배점
양적 평가	10년 이상 40점	40점
	5년 이상 ~ 10년 미만 35점	
	5년 미만 30점	
질적 평가	경력 별로 전공일치 100%, 전공유사 80%, 전공상용 50%, 전공불일치 0%로 인정함.	

다. 연구실적물 등 심사(총 배점 : 45점)<개정 2017.06.15.>

연구실적 심사는 최종학위논문과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4년 이내에 발표한 2편(200%) 이상의 연구 실적물(**최종학위논문 제외**)이 있어야 하며 제출된 연구 실적물 중 응모자가 지정 200%의 실적물(박사학위소지자 포함)에 대해서만 항목별 심사하고, 배점은 최종 학위 논문은 15점 연구실적물은 30점으로 하여 합계 45점 만점으로 한다.

1) 최종학위논문(15점)

평가요소	배점	비고
채용분야와의 관련성	상 : 5	
	중 : 3	
	하 : 2	
논문의 창의성	상 : 5	
	중 : 3	
	하 : 2	
논문의 기여도	상 : 5	
	중 : 3	
	하 : 2	

2) 최종학위논문 외 연구실적물 평가(30점)<개정 2020.10.01.>

구 분	배점기준		
논문 양적 평가 (10점)	01. 평가점수 전체 400%이상 10점, 02. 인정대상 연구실적물 가. 국제전문학술지(가중치 2배) - SCI, SSCI, A&HCI, SCIE 나. 국제일반학술지(가중치 1.5배) - SCOPUS 다. 한국연구재단등재 학술지(등재후보 포함) 03. 인정환산율 단독 100%, 2인 70%, 3인 50%, 4인 이상 30%, 단, 제1저자 및 교신저자는 저자수(3인 이상)과 관계없이 70% 인정		
논문 질적 평가 (10점)	01. 최근 4년 이내 발표된 연구실적물 중 지원자가 지정한 대표 논문 2편을 대상으로 함. 02. 평가점수 : 각 편당 10점 만점		
	구 분	객관적평가 (2점)	주관적평가 (3점)
	국제학술지	2점	탁월(상) 3점 우수(중) 2점 보통(하) 1점
	한국연구재단	1점	
저술 실적 (5점)	01. 저술서 02. 외국어로 출간된 국제수준의 저술서 (가중치 2배) 03. 번역서, 편저, 편역서(가중치 0.5 배) ※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있는 단행본, 발행물에 한하여 인정 ※ 서평, 학회지, 학술대회 발표 논문, 개정증보판 제외 ※ 단독저서 1편 / 공동저서 1/N편		
지식 재산권 (5점)	01. 특허 02. 외국특허(가중치 2배) 03. 실용신안 · 프로그램 저작권 (가중치 0.5배) ※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 등록실적은 권리자의 계약주체가 학교법인 또는 산학협력단 명의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의장 · 상표등록은 제외 ※ 단독발명0.5편 / 공동발명0.5/N편		

※ 채용계획 수립 중 학과의 특성에 따라 학과의 요청이 있는 경우 총장의 재가를 얻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라. 공개강의 심사(총 배점 : 30점)<개정 2017.06.15.>

- 1) 신규교원채용심사 관련한 실질적인 객관성, 공성을 기하기 위해 공개강의를 실시하여 배점을 부여한다.
- 2) 공개강의는 10분 발표, 5분질의 및 응답을 원칙으로 한다.
- 3) 공개강의 심사의 대상자는 전공심사의 합계점수 최고 득점자(10명 이내)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상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구분	교수방법	강의태도	강의체계성 및 적절성	초빙분야와의 관련성	교수매체사용	계
배점	6	6	6	6	6	30

마. 면접심사<개정 2017.06.15.>

- 1) 면접심사는 교수로서의 자질과 교수, 연구능력 및 학생지도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1차 면접대상자는 공개강의심사 대상자로 하고 최종 면접대상자는 3명 이내로 한다.
- 2) 1차 면접심사의 배점은 70점을 만점으로 하며 공개강의 심사 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면접대상자를 선정하고 최종면접심사의 배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 3) 1차 면접심사는 교원채용심의위원회 위원이 평정하며, 최종 면접은 경영진이 평정한다.
- 4) 면접심사의 평정항목은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2020.10.01.>
 - (1) 교수로서의 자질
 - (2) 임용 후 학교기여도(발전계획)
 - (3)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4)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5)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 가능성<신설 2020.10.01.>

구분	1차 면접 배점 (70점)	최종 면접 배점 (100점)	비고
교수로서의 자질	20	30	
임용후학교기여도(발전계획)	20	30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10	20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10	10	
창의력, 의지력, 기타발전가능성	10	10	

바. 종합심사배점

구분	전공심사			공개강의심사 및 (1차)면접심사 (3'0점 / 70점)	(2차)면접심사 (100점)
	전공적부심사 (15점)	경력심사 (40점)	연구실적심사 (45점)		
점수	P/F			P/F	임용예비자선정

※ 서류심사, 공개강의 심사 및 1차 면접심사, 최종면접심사는 각 단계 별로 심사한다.